

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의안 번호	2015~ 10
----------	----------

제출일자	2015. 02. 23.
제 출 자	이성복 의원 외 10명

1. 제안이유

○ 거창군의회 의원 5분 자유발언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관련 회의규칙을 정비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5분 자유발언 단서규정 신설(안 제33조의2제1항단서)

○ 군정질문이 있는 날은 5분 자유발언을 실시하지 아니함

나. 5분 자유발언 신청시일 조정(안 제33조의2제2항)

○ 본회의 개의일 전일까지 → 본회의 개의 24시간 전까지

다. 5분 자유발언 내용에 대한 규정 신설(안 제33조의2제3항)

○ 의회 및 의원의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타인의 신상과 관련된 발언은 의장이 허가하지 아니하거나 발언을 중지하게 할 수 있음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 법령

○ 「지방자치법」 제71조

나. 예산 조치 : 해당사항 없음

다. 집행부의견조회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타 사항

(1) 부패영향평가 : 해당사항 없음

(2) 규제심사 : 해당사항 없음

(3) 입법예고 : 해당사항 없음

(4) 비용추계서 : 해당사항 없음

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3조의2제1항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군정질문이 있는 날은 5분 자유발언을 실시하지 아니한다.

제33조의2제2항 중 “본회의 개의일 전일까지”를 “본회의 개의 24시간 전까지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의장은 발언요지 접수 후 의회 및 의원의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다른 사람의 신상과 관련된 발언의 경우에는 허가하지 아니하거나 발언을 중지하게 할 수 있다.

부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33조의2(5분 자유발언) ① 의장은 본회의가 개의되는 경우 그 개의시로부터 30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의원에게 의회가 심의중인 의안과 청원, 기타 중요한 관심사안에 대한 의견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5분 이내의 발언(이하"5분 자유발언"이라 한다)을 허가 할 수 있다.</p> <p><신 설></p> <p>②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<u>본회의 개의일 전일까지</u> 그 발언요지를 간략하게 기재하여 의장에게 신청 하여야 하며, 발언순서는 신청 순서와 같다.</p> <p><신 설></p>	<p>제33조의2(5분 자유발언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</p> <p><u>다만, 군정질문이 있는 날은 5분 자유발언을 실시하지 아니한다.</u></p> <p>② ----- <u>본회의 개의 24시간 전까지</u>----- ----- -----</p> <p>③ <u>의장은 발언요지 접수 후 의회 및 의원의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다른 사람의 신상과 관련된 발언의 경우에는 허가하지 아니하거나 발언을 중지하게 할 수 있다.</u></p>

관련법령

□ 「지방자치법」

제71조(회의규칙) 지방의회는 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으로 정한다.